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－제31호

제출년월일 : 2007. 4. 4.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중간관리계층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승진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을 높임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합계는 종전과 같음

○ 정원 : 856명

나.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3조)

○ 일반직 6급 정원확대(증 6명) : 170명 → 176명

○ 일반직 7급 정원축소(감 6명) : 217명 → 211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나. 예산조치 : 별도 소요비용 없음
다. 합　　의 : 기획감사담당관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3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사천시 조례 호

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	면	동
총 합계	**856**	**439**	**16**	**132**	**74**	**22**	**102**	**71**
정무직 합계	**1**	**1**						
단체장(시장)	1	1						
일반직 합계	**677**	**362**	**10**	**84**	**47**	**20**	**90**	**64**
4급	6	3	1	2				
5급	45	19	2	6	4	1	7	6
6급	176	96	3	20	12	5	28	12
7급	211	110	1	34	15	6	21	24
8급	163	94	3	20	12	4	15	15
9급	76	40		2	4	4	19	7
별정직 합계	**15**	**1**		**14**				
6급상당	12	1		11				
7급상당	3			3				
지도직 합계	**29**			**29**				
지도관								
지도사	29			29				
기능직 합계	**134**	**75**	**6**	**5**	**27**	**2**	**12**	**7**
6급	5	5						
7급	14	11		1	2			
8급	24	16	2		5	1		
9급	51	25	4	4	12		6	
10급	40	18			8	1	6	7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]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총합계 856명 일반직 합계란중 6급 : 총계 170, 본청 91, 직속기관 19 7급 : 총계 217, 본청 115, 직속기관35	[별표]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총합계 856명 일반직 합계란중 6급 : 총계 176, 본청 96, 직속기관 20 7급 : 총계 211, 본청 110, 직속기관34

관 계 법 령 발 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】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1~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(행정자치부2004. 9. 24)】

【행정자치부령 제 253 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】

제18조(정원책정기준)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

[별표 5] 제1호 나목

나. 시·군·자치구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시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2% 이내	24% 이내	12% 이상
군	1% 이내	6% 이내	27% 이내	31% 이내	24% 이내	11% 이상
자치구	1% 이내	7% 이내	19% 이내	29% 이내	31% 이내	13% 이상

1.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읍·면·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2.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% 이내, 7급을 30% 이내로 한다